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9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중소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연쇄부도의 위험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의무화하였으며, 하도급거래 위탁시 사전에 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토록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 비율 제고와 어음만기일 단축을 통해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과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고,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며 또한 서면교부시점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2條(定義) ① (생략)</p> <p>② 이 법에서 “原事業者”라 함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p> <p>1. (생략)</p> <p>2. 中小企業者중 直前 事業年度の 年間賣出額(關係法律에 의하여 都給限度額의 적용을 받는 去來의 경우에는 당해年度の 都給限度額의 合計額을, 年間賣出額이나 都給限度額이 없는 경우에는 資産總額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가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다른 中小企業者의 年間賣出額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의 2배를 초과하는 中小企業者로서 그 다른 中小企業者에게 製造 등의 委託을 한 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間賣出額에 해당하는 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p> <p>③ ~ ④ (생략)</p>	<p>第2條(定義) ① (現行과 같음)</p> <p>②</p> <p>1. (現行과 같음)</p> <p>2. 施工能力評價額 施工能力評價額 施工能力評價額</p> <p>③ ~ ④ (現行과 같음)</p>

現 行	改 正 案
<p>〈新 設〉</p> <p>第3條(書面の 교부 및 書類의 보존) ①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受給事業者에게 <u>교부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第6條(先給金の 支給) ① ~ ② (생략)</p> <p>③ 第13條(下都給代金の 支給等) 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給金を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率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目的物の 受領일부터 60日”은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金を 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p> <p>第13條(下都給代金の 支給等) ① ~ ② (생략)</p> <p>③ 原事業者가 製造등의 委託을 한 경우에 原事業者가 發注者(再下都給의 경우에는 原事業者)로부터 竣工金を 받은 때에는 下都給代金を, 既成金を 받은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施工한 分에 상당한 금액을 그 支給받은 날로부터 15日(下都給代金の 支給期日이 그 전에 到來하는 경우에는 支給期日)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p> <p>〈新 設〉</p> <p>〈新 設〉</p>	<p>⑩ 이 法에서 “發注者”라 함은 製造, 修理 또는 施工을 原事業者에게 都給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再下都給의 경우에는 原事業者를 말한다.</p> <p>第3條(書面の 교부 및 書類의 보존) ①</p> <p>.....</p> <p>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事前(製造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目的物の 納品을 위한 作業에 착수하기 전을, 修理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계약이 체결된 修理行爲에 착수하기 전을,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契約工事を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受給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 ③ (現行과 같음)</p> <p>第6條(先給金の 支給) ① ~ ② (現行과 같음)</p> <p>③ 第13條(下都給代金の 支給等) 第6項 및 第8項.....</p> <p>.....</p> <p>第13條(下都給代金の 支給等) ① ~ ② (現行과 같음)</p> <p>③</p> <p>..... 發注者</p> <p>.....</p> <p>④ 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下都給代金を 지급함에 있어서는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당해 製造 등의 委託과 관련하여 支給받은 現金比率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 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を 어음으로 支給하는 경우에는 당해 製造 등의 委託과 관련하여 發注者로부터 原事業者가 교부받은 어음의 支給期間(發行日로부터 滿期日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現 行	改 正 案
<p>④ ~ ⑤ (생략)</p> <p>⑥ 第4項에서 적용하는 割引率은 市中銀行에서 적용되는 商業어음 割引率을 참작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p> <p>第14條(下都給代金の 直接支給) 發注者는 受給事業者가 製造·修理 또는 施工한 分에 해당되는 下都給代金を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할 수 있다. 이 경우 發注者의 原事業者에 대한 代金支給債務과 原事業者의 受給事業者에 대한 下都給代金支給債務는 그 支給한 限度에서 消滅한 것으로 본다.</p>	<p>⑥ ~ ⑦ (現行의 第4項 내지 第5項과 같음)</p> <p>⑧ 第6項</p> <p>第14條(下都給代金の 直接支給) ① 發注者는 原事業者의 破産·不渡 등의 이유로 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を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大統領令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製造·修理 또는 施工한 分에 상당하는 下都給代金を 해당 受給事業者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發注者의 原事業者에 대한 代金支給債務과 原事業者의 受給事業者에 대한 下都給代金支給債務는 그 범위내에서 消滅한 것으로 본다.</p>
<p>〈新 設〉</p> <p>第16條(設計變更등에 따른 下都給代金の 調整)</p>	<p>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事業者가 당해 下都給契約과 관련하여 賃金, 資材代金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를 첨부하여 原事業者가 당해 下都給代金の 直接支給中止를 요청한 경우에는 發注者는 당해 下都給代金を 直接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① ~ ② (생략)</p> <p>③ 第13條(下都給代金の 支給등)第5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追加金額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利率에 관하여, 同條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은 追加金額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率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은 “追加金額을 지급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p>	<p>第16條(設計變更등에 따른 下都給代金の 調整)</p> <p>① ~ ② (現行과 같음)</p> <p>③ 第13條(下都給代金の 支給등)第7項</p> <p>同條第6項 및 第8項</p>
<p>第25條(是正措置)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書面の 교부 및 書類의 보존)·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の 決定 금지) 내지 第13條의2(建設下都給契約履行 및 代金支給 보증) 및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支給)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原事業者에 대하여 下都給代金등의 지급, 法違反行爲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p>	<p>第25條(是正措置) ①</p> <p>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の 決定 금지)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發注者 및</p>

現 行	改 正 案
② ~ ④ (생략) 第25條의3(課徵金)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 또는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受給事業者에게 製造 등의 委託을 한 下 都給代金이나 原事業者로부터 製造 등의 委託을 받은 下都給代金の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 1. ~ 3. (생략) <新 設> 4.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지급 등) 내지 第20條 (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原事業者 ② (생략)	② ~ ④ (現行과 같음) 第25條의3(課徵金) ① <u>發注者 · 原事業者</u> 1. ~ 3. (現行과 같음) 4. 第14條(下都給代金の 直接支給)의 規定에 위반 한 <u>發注者</u> 5. (現行 第4號와 같음) ② (現行과 같음)

구조규제 構造規制

독점금지에 대한 정책은 구조(원인)규제와 폐해(행위)규제의 2가
 지 형태로 크게 구별됨. 각국의 독점금지법은 경쟁 촉진을 위해 단순히 표출되어진 개개
 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그치지 않고, 보다 본질적으로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만들
 기 위해 시장에서의 독점화·과점화를 초래하는 합병이나 주식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더
 나아가 독점·과점상태의 배제(거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분할이나 경제력 집중의 배
 제)까지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 회복하기
 위한 규제를 구조규제라 함. 구조규제는 시장경제에 대하여 시장구조·행동·성과의

세 개념에 기초한 인과론적 분석 틀을 설정하고, 시장구조가 시장행동 및 시
 장성과를 결정한다는 구조론적 인식을 전제로 함. 그 예로 기업결합의
 결과 형성되는 시장구조하에서 기대되는 시장행동 및 그에 따른 경
 쟁저해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이전이라도 당해 기업결합을 규제해
 야 한다는 입장이며,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독점적 시장구조까지도
 기업분할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는 것임.

